

제 4 절
추가공사비
(공기연장)

감리용역 증액대금 지급유보 사건



사건번호 | 중재 제12111-0034호

구분	내용
신청원인	추가공사비(공기연장)
신청금액	KRW 24,420,000
판정금액	KRW 24,420,000 (인용률: 100.00%)
비용부담	피신청인 부담
처리기간	49일
종류	공공
중재판정부	1인 (법조계)
핵심단어	공기연장, 감리책임

판정요지

- [1]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성능을 보장하고 결과적으로 도급인이 추구한 공사목적을 이루게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반면에 공사감리계약의 경우 위 도급계약과 같이 성능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감리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피신청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해에 대해 신청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2]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업무 범위에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품질관리계획의 검토, 확인 및 지도,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관한 검토 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 [3]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의 의미

판정요약

1. 사실관계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가연성폐기물 자원화시범사업의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공사의 기간이 연장되면서 위 용역계약에 대한 변경계약(감리비 증액)을 체결하였다.
- 양 당사자는 제3자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기지연에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위 변경계약상 증액된 감리비를 감액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합의를 하고 감리용역대가 증액금 지급을 유보하였다.
- 한편 위 공사의 시공자들은 신청인을 상대로 지체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별도 중재신청을 본 중재원에 하였는 바, 본 중재원은 위 시공자들의

귀책사유가 일부 인정되므로 지체상금 일부를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2. 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공사의 책임감리원 지위에서 업무수행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은 위 공사의 공기지연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 신청인은 책임감리원으로서 위 시공사들이 생활폐기물 함수율을 예측하여 이 사건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도 검토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한편 신청인과 피신청인과 사이에 위 시공사들의 도급계약과 같이 성능을 보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감리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피신청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해에 대해 신청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신청인이 설계도서의 검토 확인을 게을리 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지연에 따른 책임이 없다.

 판정전문

판정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4,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 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4,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2.부터 이 사건 중재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정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감리용역계약 및 변경계약

-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신청외 갑 주식회사 등 3사가 공동으로 시공한 가연성폐기물 자원화시범사업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가연성폐기물 자원화시범사업 전면책임감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의 총 계약기간은 2007. 11. 23.부터 2009. 12. 12. 까지이고 총 계약금액은 금 893,557,000원이었다.
- (2) 그러나 이 사건 공사가 시운전단계에서 함수율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쓰레기가 반입되어 건조설비 등에 과부하가 발생함에 따라 시운전이

중단되었고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는데, 이러한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기간도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연장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그 중 1차 계약변경시에는 총 계약 금액도 증액되었다.

1차 계약 변경

- 변경된 총 계약기간 : 2007. 11. 23.부터 2010. 2. 12.까지
- 변경된 총 계약금액 : 금 917,977,000원(금 24,420,000원 증액)

2차 계약 변경

- 변경된 총 계약기간 : 2007. 11. 23.부터 2010. 4. 12.까지
- 변경된 총 계약금액 : 금 917,977,000원(변동없음)

나. 공기지연 책임에 따른 감리비 증액분 감액여부 결정의 합의

신청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1차 변경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함으로써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서는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기지연에 책임이 있다는 제3자의 판단이 있을 경우 이 사건 용역계약의 1차 변경 당시 증액된 감리비를 감액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합의를 하였다.

- (1) 시운전기간 연장에 따른 공기지연의 책임 소재는 신청인, 피신청인, 시공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에서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거나 최종적으로 제3자(기획재정부 또는 조달청 유권해석 등)의 판단을 받아 결정한다.
- (2) 원인규명 결과 신청인에게 공기지연의 책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 감리비 증액분을 감액조치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3)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결정될 때까지 감리용역대가 지급시 그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을 유보하는데 동의한다.

다. 피신청인과 시공사들 사이의 중재판정

신청의 갑 등 시공사들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본원에 중재신청을 하여 피신청인이 지체상금으로 공사대금에서 감액한 금액과 미지급 공사금액 등을 신청하였다. 이러한 위 시공사들의 신청에 대해 본원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입찰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이루어졌는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이라 함은 수급인이 도급인이 의욕하는 공사 목적물의 설치목적에 이해한 후 그 설치목적에 맞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스스로 공사를 시행하며 그 성능을 보장하여 결과적으로 도급인이 의욕한 공사목적에 이루게 해야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고 전제한 후 “2009. 11. 12. 성능시험이 중단된 것은 시운전 당시 함수율이 높은 폐기물이 다량으로 반입된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의 목적이 생활폐기물을 파쇄, 선별 등 기계적 전처리를 통해 가연물을 회수하여 고품연료를 생산하여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는데 있으므로 결국 공사가 지연된 것은 위 시공사들에게 책임이 있고 피신청인의 지체상금의 감액이 원칙적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다만 2009. 11. 12. 성능시험 당시 제공된 폐기물이 보통 때보다 함수율이 높아 건조시설 등에 과부하가 발생한 점 등의 사유로 총 132일의 지체일수에 따른 지체상금 중 40%를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라. 피신청인의 감리비 증액분 지급 유보

피신청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용역계약의 1차 변경 당시 증액된 감리비 금 24,42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고 있으며 신청인에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부실벌점을 측정하여 통보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다.

2. 공기지연에 대한 신청인의 귀책사유 존재 여부 판단

가. 공기지연에 대한 제3자의 판단 유무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시운전기간 연장에 따른 공기지연의 책임 소재는 신청인, 피신청인, 시공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에서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거나 또는 제3자(기획재정부 또는 조달청 유권해석 등)의 판단을 받아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공동조사단에 의한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었다거나 또는 제3자에 의한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제3자의 판단에는 본원의 중재판정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사의 공기지연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본 중재판정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나. 책임감리원의 책임 범위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이외에도 설계도서가 당해 지형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7. 선고 99다70365호 판결 참조).

또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05조에 의하면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업무는 단순히 신청인의 주장처럼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의 검토, 확인 및 지도,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관한 검토 확인도 그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신청인은 신청외 갑 등 시공사들이 생활폐기물 함수율을 예측하여 이 사건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도 검토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신청외 갑 등 시공사들은 피신청인과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성능을 보장하고 결과적으로 도급인이 의욕한 공사목적 을 이루게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반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이에 위 시공사들과 같이 성능을 보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감리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피신청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해에 대해 신청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신청인이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

신청인은 반입폐기물 최대 함수율이 40%로 적용된 설계도서를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아 감리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입찰안내서에도 수분함량의 범위는 14.8% 내지 25.51%라고 기재되어 있고, 또 자체적으로도 통계를 확인하여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수분비율이 최대 36.1%라는 것을 확인하여 신청외 갑 등 시공사들이 반입폐기물의 최저질의 함수율이 40%인 경우를 상정하여 기본설계도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검토 확인하였으므로 신청인으로서 성실하게 감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신청인이 설계도서의 검토 확인을 게을리 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신청인에게는 이 사건 공사의 지연에 따른 책임이 없다.

3.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지연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결정될 때까지 감리용역대가 지급을 유보하는데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시까지는 신청인이 지급받아야 할 감리용역대가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고 이 사건 중재판정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감리용역대가 지급유보금 24,42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중재판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부분은 기각하며 중재비용은 중재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